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이영실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4명이 공동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현재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소량배출, 다양한 품목 및 다른 처리 방법 등 특성이 있어, 자치구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에,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, 국민 건강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의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해 자치구가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(안 제7조제1항), 구청장의 폐기물에 대한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(안제7조제2항). 그

밖에 市의 성과관리, 자료요구, 시정조치 등 규정을 통해 市의 구체적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(안제7조제3항및제4항)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